



## 1. 변호사 공증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드라마틱한 야사

우린 변호사가 공증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외국의 예를 보면 꼭 변호사가 공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변호사들이(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을 하게 된 역사를 돌이켜 보면, 드라마틱하고, 아슬아슬한 비사(秘史)가 존재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또는 변협이라 약칭) 공보이사의 자격으로 대한변협의 숨은 역사를 찾아 ‘대한변협신문’에 연재하다가 변호사 공증 비사를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말처럼, 내가 공증을 하는 변호사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고, 자랑스러워졌다. 마치 보잘것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한 내 조상들이 사실은 이 나라의 큰일을 한 자랑스러운 집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 뿌듯함 같은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 집안의 뿌리를 혼자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증을 하는 모든 변호사님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글을 이곳 “공증과신뢰”에 기고하게 되었다. 이제 그만 변죽을 울리고 바로 그 숨은 역사를 탐구해 보자.

60년대와 70년대는 변호사 단체 분열의 시대이다. 서울변호사회, 서울제1변호사회, 서울제2변호사회, 수도변호사회, 이렇게 많을 때는 4단체로 분열되어 있었다(이 분열

은 1980년 5월 서울통합변호사회 발기총회를 가짐으로써 지금의 단일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성립했다). 그렇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회원 수를 가장 많이 가진 서울변호사회 차지였다. 그런데 1970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이변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그 이변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변호사 공증제도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0년 5월 30일 그리고 다시 오후 4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 참고로 그 당시 대한변협은, 지금은 시립미술관과 서울시청 서소문 본관으로 사용되는 서소문 법원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날 변협회장 선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서울변호사회 회장 출신이 변협회장이 되었는데, 이날 서울제1변호사회 회장으로 협회장 선거에 나선 홍승만 후보가 대법관과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배정현 후보를 3표차로 따돌리고 협회장(제19대)이 된 것이다. 다행히 배정현 후보는 그 다음번에 20대 대한변협회장이 되었다. 홍 회장의 무슨 공약이 대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홍 변호사가 들고 나온 공약이 바로 “변호사도 공증업무를 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배 후보를 지지하던 인천의 서울제2변호사회 대의원 2명이 막판에 홍 후보로 입장 선회한 것이다. 홍승만 제19대 대한변협회장은 취임사에서 공약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공약(公約)은 이름 그대로 공약(空約)으로 흐지부지될 수 있는데, 홍 회장은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였다. 그래서 나도 지금 공증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홍 회장이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도 무척이나 드라마틱하다.

우선 홍 회장은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 특례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에 일정 수의 변호사가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법안 마련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변호사 단체에게는 더욱 그렇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이다. 입법절차를 아는 사람은 하나의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홍 회장은 대법원의 도움도 받아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시키는데 일단 성공을 한다. 그다음 관문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이다. 홍 회장은 40일간 노재필 법사위원장(1916년생. 일본고등문관시험. 6대·7대 국회의원. 1997년 사망)을 포함한 여야 법사위

원들을 설득하였고, 이 법안은 1970년 12월 2일 마침내 법사위마저 통과를 한다. 이제 본회의만 통과를 하면 된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다 된 줄 알았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명공증인들의 반대와 이호 법무부장관(1914년생. 일본고등문관시험. 8대·20대 법무부장관. 20대·30대 내무부장관. 1997년 사망)까지 변호사가 공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다 보니, 박정희 대통령의 보류 명령이 내려와 버렸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것이다. 불굴의 의지를 가진 홍 회장은 박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는 여러 방법으로 면담을 추진한다. 대통령 면담이 예나 지금이나 어디 쉽나. 거의 꿈이 사라져 갈 즈음에 이호 법무부장관이 배영호 변호사(1915년생. 일본고등문관시험. 76년 변협회장. 1983년 사망)로 바뀌었다. 홍 회장은 잣더미에서 불씨를 살려냈다. 정기국회 폐회를 10일 남겨두고 홍 회장은 다시 의지를 불태운다. 다시 배영호 장관과 노재필 법사위원장을 동원했다. 그러나 각하의 지시를 뒤집지는 못한다. 폐회 하루를 남기고 홍 회장은 마지막 지푸라기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떠올린다. 남산 중정으로 그를 만나러 가다가 현관에서 김치열 차장(1921년생. 일본고등문관시험. 75년 내무부장관. 78년 법무부장관. 2009년 사망)을 만난다. 그를 잡고 각하를 설득해달라고 간청을 한다. 크게 기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치다꺼리는 새벽, 김치열 차장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각하가 다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겠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이른 새벽 배 장관에게 전말을 전화로 밝히고, 배 장관 집무실에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린다. 각하는 배영호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의견을 묻고, 이호 장관과 달리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배 장관에게 추진 재가가 떨어진다. 이날이 바로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법안은 극적으로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드디어 변호사들이 공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2. 다시 대한공증인협회가 창설되기 위한 힘겨운 몸부림

이렇게 1971년부터 변호사들이 공증을 하게 되었지만, 지금의 대한공증인협회가 창설되기에는 거의 3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1999년 7월 10일 협회가 창립되었으니 말이다. 변호사 공증을 시작해보니 협회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홍승만, 양준모(1922년생.

조선변호사시험. 78년 대한변협회장. 1993년 사망) 변호사 등은 공증인협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에 인가를 신청하였는데 거절당했다. 그래서 우선 1973년 10월 22일 서울 지방변호사회관에서 사설단체로 서울공증협회를 만들었다. 활동은 부진했다. 그래도 1979년 12월에는 서울공증협회를 해산하고, 전국 규모의 대한공증협회(사설단체)를 만들어 다시 법무부에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이번에도 거절당했다. 다시 이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드디어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1998년 12월 공증인법을 통과시키고, 1999년 7월 10일 공증인법에 의거한 대한공증인협회를 법무부 인가를 받고 창설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때는 이미 초기의 법인격을 가진 공증인협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했던 초기 발기인 홍승만, 배영호, 고재호(1913년생. 조선변호사시험. 54년 대법관. 73년 대한변협회장. 1991년 사망), 양준모, 오승근(1908년생. 일본고등문관시험. 63년 서울제1변호사회 회장. 2002년 사망) 변호사는 이미 돌아가신 이후였다. 홍승만 회장은 1970년 대한변협회장을 하더니 1971년에는 8대 국회의원(전국구)까지 하였는데 1985년에 돌아가셨다. 이 모든 주역들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신 것이다. 마음이 짠한 역사이다.

### 3. 마치며

서론에서도 간단히 피력했지만 나의 경우 이런 숨 가쁜 역사를 알게 되니 내가 공증을 하는 변호사로 산다는 것이 값지고, 자랑스러워졌다.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던 공증인협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사”라는 작지만 자랑스러운 감투까지 쓰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사의 자격으로 공증인협회의 활동을 지켜보니, 아직까지 회원들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여 공증인협회의 활동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 이제는 공증하는 변호사로 사는 것에 좀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공증인협회의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